2022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민재	910304-*****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단위:원)

월별	보수월액(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결글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159,460	19,560	0	0	
02월	159,460	19,560	0	0	
03월	159,460	19,560	0	0	
04월	241,160	29,330	0	0	
05월	241,160	29,260	0	0	
06월	241,160	29,260	0	0	
07월	241,160	29,260	0	0	
08월	241,160	29,260	0	0	
09월	241,160	29,260	0	0	
10월	241,160	29,260	0	0	
11월	241,160	29,260	0	0	
12월	241,160	29,260	0	0	
연말정산	0	0			
합계	2,648,820	322,090	0	0	
총합계				2,970,910	

1. 보수월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1-

2.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민재	910304-*****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단위:원)

월별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201,910	0
02월	201,910	0
03월	201,910	0
04월	201,910	0
05월	201,910	0
06월	201,910	0
07월	248,850	0
08월	248,850	0
09월	248,850	0
10월	248,850	0
11월	248,850	0
12월	248,850	0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0	
추납보	험료 납부금액	0
실업크레딧 납부금액		0
합계	2,704,560	0
	총합계	2,704,560

- 1.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2.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민재	910304-*****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주식회사 케이비	손해보험	KB다이렉트(인터	l넷)개인용			
보장성	202-81-48	370	202215****		910304-****	김민재	812,440
	인별합계금액						812,44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민재	910304-*****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0-46-81*	중****	일반	14,300
3-91-00*	마****	일반	5,000
5-98-01*	연****	일반	21,6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40,9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40,9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4-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민재	910304-****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13,635,971	18,854,232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135,370	81,70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2년 합계	18,257,582	81,700	514,950	0	18,854,232
1월~6월	9,260,620	17,700	234,500	0	9,512,820
7월~12월	8,996,962	64,000	280,450	0	9,341,412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202-81-45602	삼성카드주식회사	일반	18,257,582
신용카드	202-81-45602	삼성카드주식회사	전통시장	81,700
신용카드	202-81-45602	삼성카드주식회사	대중교통	514,95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30116-740275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5-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민재	910304-****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인별합계금액				18,854,232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민재	910304-****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3,124,105	5,974,589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292,520	274,45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2년 합계	5,700,139	274,450	0	0	5,974,589
1월~6월	2,483,449	234,850	0	0	2,718,299
7월~12월	3,216,690	39,600	0	0	3,256,29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426,229
직불카드 등	375-88-00197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일반	5,273,910
직불카드 등	375-88-00197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전통시장	274,450
인별합계금액				5,974,589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30116-740275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7-

2022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민재	910304-*****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7,116,419	3,759,214	

■ 전통시장 분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1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2년 사용금액 합계	
0	0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2년 합계	3,759,214	0	0	0	3,759,214
1월~6월	1,818,860	0	0	0	1,818,860
7월~12월	1,940,354	0	0	0	1,940,354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일련번호: 20230116-7402757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8-

2022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민재	910304-*****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구분 종류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에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361,287	25,025	365,575	42,500		
	686,513	337,960	418,611	225,480	3,759,214	
	115,626	216,167	533,000	431,47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9-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조회기간 : 2022년 01 ~ 12월)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민재	910304-****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계좌번호	대출일	상환액 계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375-88-00197	365002****	2020-08-08	138,573,340
합 계				138,573,340

- 1. 공제대상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
-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명의여야 함
- 2. 공제대상금액: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10-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취급기관별)내역 [주택마련저축]

(조회기간: 2022년 01~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민재	910304-*****		

■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저축구분	저축명	가입일자	납입금액 계
(주) 신한은행 (202-81-02637)	223082****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7-10-25	1,200,000
합 계					1,200,000

- 1. 공제대상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의 40%(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 아님)
- ※ 2014.12.31.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8년 납입분부터 공제대상 아님
- ※ '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 ※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주택 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공제 가능

-11-

2.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